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세액조정 제안

체납 세금 또는 수수료 잔액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 대상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s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청; CDTFA)의 절충 프로그램 제안은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납부 대안입니다.

### 세액조정 제안은 무엇입니까?

세액조정 제안(OIC)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CDTFA에 납부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제안 금액을 제시하고, CDTFA에서 해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그 채무는 더 이상 체납액 전액이 아니며, CDTFA는 제안과 관련된 약관에 따라 관련 세금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 세액조정 제안 자격 조건

현재 세액조정 제안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쇄된 계정에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가 있고,
-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체 또는 유사한 사업체와 더 이상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그리고
-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 전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CDTFA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세액조정 제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 납부해야 할 세금, 수수료 또는 할증료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한 현재 영업중인 사업체,
- 전임자로부터 납세의무를 상속받았을 수 있는 사업체의 승계자 그리고
- 판매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세 의무가 발생한 소비자.

그러나 CDTFA에서는 이들에게 담보 계약에 서명하고 향후 5년 동안 제출된 모든 세금 신고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락 가능한 제안

일반적으로 CDTFA가 납부하기로 제안한 금액이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4년) 동안 납세자로 부터 징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제안은 수락됩니다. 납세자가 납세 채무액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CDTFA는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 OIC 사전 자격 판단 도구

사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 온라인 OIC 사전 심사 도구를 사용하여 OIC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IC에 관심이 있고 사업이 아직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경우, OIC 부서(1-916-322-7931)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새액조정 신청서(개인의 경우 CDTFA-490, 기타 모든 경우 CDTFA-490-C)를 작성하고 이를 지원 문서(신청서에 설명됨)와 함께 현지 CDTFA 사무소 또는 자신 계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은 사정을 위해 새액조정 제안 부서로 전달될 것입니다. 제안 제출시 어떠한 납부도 하지 마십시오.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CDTFA는 제안을 검토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정이 더 복잡하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분할 납부 계약 또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CDTFA가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해당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DTFA는 징세 활동 지연으로 인해 채무액 징세 능력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해당 제안이 보류 중인 동안 새로운 징세 조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 제안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CDTFA 귀하의 책임과 재정 상황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을 평가하고 다음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 납부 능력
- 자산중 자기자본 금액
- 현재와 미래의 수입 및 지출
-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체납액이 탈세 또는 사기로 인한 채무인지 여부

귀하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공개 정보 및 비공개 정보의 원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OIC 부서에서 귀하의 제안 수락을 권장하는 경우, 귀하에게 편지를 보내 제안한 전액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총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OIC 부서는 재량에 따라 귀하와 협력하여 납부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한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CDTFA 관리팀이 귀하의 최종 검토를 완료하는 동안 CDTFA는 해당 납부액을 보증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최종 단계

OIC 부서에서 귀하의 제안 수락을 권장하고 귀하가 제안 금액을 지불한 후 CDTFA 관리진이 귀하의 케이스를 결정하고 편지로 최종 결정을 귀하에게 알려줍니다.

CDTFA가 귀하의 제안을 승인하면 해당 제안과 관련된 제반 약관에 따라 모든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옵션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요청하면 보증금(무이자)을 돌려드립니다. 단, 사기행위나 자산은닉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계획에 동의했지만 예정된 날짜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CDTFA는 채무액에 대한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OIC 신청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는 지역 CDTFA 사무소나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는 부서, CDTFA 웹사이트,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OIC 관련 상세 정보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제안이 거절된 경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예. CDTFA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귀하의 계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TFA가 귀하가 제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별납부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를 위해 할부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IRS/FTB/EDD OIC가 승인되었습니다. CDTFA는 나의 제안을 자동으로 승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CDTFA는 이 책자에 설명된 방식을 근거로 귀하의 제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제안된 금액을 납부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귀하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CDTFA의 재량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제안한 금액 전체를 1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제안된 금액의 일부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평가할 때 사전에 처리한 납부를 고려하지만 해당 금액은 귀하가 제안한 총 금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제안이 거부된 경우 보증금을 채무액에 충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경우, 보증금을 입금한 날이 납부 유효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CDTFA에서 귀하의 채무에 납부액을 적용하기 전에 귀하는 해당 납부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인터넷: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 오전 7시30분~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Offer in Compromise(세액조정 제안) 부서:1-916-322-7931

## 판매세 및 사용세 사무소

도시	전화번호	도시	전화번호
Bakersfield	1-661-395-2880	Rancho Mirage	1-760-770-4828
Cerritos	1-562-356-1102	Redding	1-530-224-4729
Culver City	1-310-712-1210	Riverside	1-951-680-6400
Diamond Bar	1-626-480-7200	Sacramento	1-916-227-6700
El Centro	1-760-352-3431	Salinas	1-831-754-4500
Fairfield	1-707-862-3501	San Diego	1-858-385-4700
Fresno	1-559-440-5330	San Francisco	1-415-356-6600
Glendale	1-818-543-4900	San Jose	1-408-277-1231
Irvine	1-949-440-3473	Santa Rosa	1-707-890-6267
Oakland	1-510-622-4100	Ventura	1-805-856-3901

위에 기재된 사무소 내역은 간행물의 날짜 기준입니다. 사무소 연락처는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주 계정	1-916-227-66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특별세 및 수수료	1-800-400-7115
목재 수출세	1-916-321-5180
납세자 권리 조언자	
수신자 부담 전화:	1-888-324-2798

